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
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
관한 대통령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농림축산식품부 등 9개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나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의 불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,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,

영업의 등록, 신고, 지정요건 중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·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 등 22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법령별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9. 00. ~ 1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
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

제1조(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)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별표 2 제2호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과.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22조제2항제6호	
1) 1차 위반 시		20

2) 2차 위반 시	40
3) 3차 이상 위반 시	60

제2조(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의 개정)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·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.

제3조(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시설 기준란 중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, 같은 란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나. 가목의 시설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제4조(「궤도운송법 시행령」의 개정)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의 금액
가.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34조제2항제1호	150
나.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승인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34조제2항제2호	150

다. 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4조제2항제3호	100
라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휴지기간을 초과한 경우	법 제34조제2항제4호	100
마.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34조제2항제5호	200
바.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	법 제34조제2항제6호	200
사.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	법 제34조제1항	
1) 1차 위반 시		100
2) 2차 위반 시		200
3) 3차 이상 위반 시		300
아. 법 제2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	법 제34조제2항제7호	5

제5조(「산림보호법 시행령」의 개정)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6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다만”을 “다만, 임차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”로 한다.

제6조(「산업표준화법 시행령」의 개정)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, 질병·부상 등으로 입

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.

제7조(「선박안전법 시행령」의 개정)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가목의 시설 및 나목의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제8조(「수도법 시행령」의 개정)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본문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각호 외의 부분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, 질병·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.

제9조(「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에 비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비고

1. 제1호 가목·나목 및 제2호 가목·나목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2. 제8조제1항제1호의 수산부산물 수집·운반업 및 제8조제1항제2호의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을 함께 수행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보관시설을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제10조(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」의 개정)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2호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본문 단서 중 “본다”를 “보며,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나목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”로 한다.

제11조(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가목 전단 중 “1년간”을 “1년간(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는 최근 3년간으로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사목의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0	15	20
만원	만원	만원

제12조(「악취방지법 시행령」의 개정)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비고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호의 시설 또는 제2호의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·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

제13조(「어장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)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4호의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제14조(「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의 개정)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2 제2호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설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제15조(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」의 개정)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시설 및 장비의 지정기준란 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설과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제16조(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)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나목 전단 중 “1년간”을 “1년간(제2호수목의 위반행위는 최근 5년간으로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2호수목의 과태료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0	20	30
----	----	----

제17조(「종자산업법 시행령」의 개정)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제1호 시설란 중 “않을 수 있다”를 “않을 수 있으며,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함께 생산하려는 경우 철재하우스와 육종포장의 면적 기준은 생산하려는 작물의 시설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호 장비란 중 “않을 수 있다”를 “않을 수 있으며,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함께 생산하려는 경우 중복되는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8조(「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) 차

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및 사목의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별표 3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및 사목의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제19조(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」의 개정)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가목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※ 비고

1.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·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.
2.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별표 1 제2호가목 1)에서 5)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다만”을 “다만,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”로 하고, 같은 표 제3호가목의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별표 1 제4호가목의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별표 2 제1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※ 비고

1. 가목의 사무실은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2. 나목의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을 반입하여 정화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반입정화시설의 바닥의 포장, 벽면·지붕설치 및 오염방지시설 등 세부설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별표 2 제2호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※ 비고

1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장비는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

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2.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·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에게 추가로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.

제20조(「하수도법 시행령」의 개정)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재해의 발생, 질병·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.

⑥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,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21조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의 개정)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5 제1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별표 5 제2호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보.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70조제2항제23호 의3	
1) 1차 위반 시		20만원
2) 2차 위반 시		30만원
3) 3차 이상 위반 시		50만원

제22조(「환경보건법 시행령」의 개정)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비고

1. 위 표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
2. 위 표의 시설 및 장비란 나목1)부터 9)까지 및 11)부터 17)까지의

장비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12호의 환경유해인자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·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3조(「궤도운송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궤도운송법 시행령」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4조(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

제5조(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6조(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.

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4조의3(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) ① ~ ③ (생략)	제44조의3(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·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.</u>
<u>④·⑤</u> (생략)	<u>⑤·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
<u>⑥</u>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교육 과목·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	<u>⑦ ----- 제6항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횟수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을 늘릴 때에도 그 총액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	제19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수도법 시행령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2조(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2조(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, 질병·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.</u>
<u>③ (생략)</u>	<u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u>
<u>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피교육자가 부담한다. 다만,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과 종업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그 운영요원과 종업원을 고용한 일반수도사업자, 저수조청소업자 또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가 부담한다.</u>	<u>⑤ ----- 제4항-----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u>⑤ (생략)</u>	<u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u>
<u>⑥ 제5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의 장(이하 이 조에서 “교육실</u>	<u>⑦ 제6항-----</u> -----

시기관장”이라 한다)은 매년 말 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작 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. 1. ~ 6. (생 략) <u>⑦</u> · <u>⑧</u>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⑧</u> · <u>⑨</u> (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)
--	---

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8조(교육) ①·② (생략)	제38조(교육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재해의 발생, 질병·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.
③·④ (생략)	④·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⑥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,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